

「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4. 12. 19.(금)
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4년 11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2월 10일

-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안 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)

1. 제안사유

○ 한옥 신축비를 지원받은 자가 준공 후 시세차익을 위한 매도 등 부동산 투기 방지와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조금 환수 조항 신설(안 제20조 제2항 1호)
- 한옥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(증여,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)한 경우 보조금 환수 조항 신설(안 제20조 제2항 2호)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한옥 신축비를 지원받은 자가 준공 후 시세 차익을 위한 매도 등 부동산 투기 방지와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대책 등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보조금 환수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

7. 수 정 안 요 지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. 12. 10. / 연철흠 의원

○ 수정이유

- 안 제20조(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) 제2항 중 “환수 할 수 있다.”라는 임의규정을 “환수 하여야 한다.”라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 보조금의 환수를 강제하기 위한 것임.

○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20조 제2항의
“환수 할 수 있다.”를 “환수 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등

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1. 수정이유

본 개정조례안 대로 시행될 경우 개정안 제20조(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) 제2항 “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 할 수 있다.”는 임의 규정으로 보조금에 대한 환수가 지난할 가능성이 있어 “환수 하여야 한다.”라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보조금 환수를 강제하기 위한 것임.

2. 주요내용

– 개정안 제20조 제2항의

“환수 할 수 있다.”를 “환수 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- ② 도지사는 제 17조에 따른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0조(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당초 지원 결정 내용과 달리 신축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지원액 환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0조(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 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</u></p> <p>2. <u>한옥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(증여, 그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)한 경우. 다만 상속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	<p>제20조(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

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2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11월 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한옥 신축비를 지원받은 자가 준공 후 시세차익을 위한 매도 등 부동산 투기 방지와 당초 지원결정 내용의 임의변경에 대한 대책 등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조금 환수 조항 신설(안 제20조제2항 1호)
- 한옥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(증여, 그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)한 경우 보조금 환수 조항 신설(안 제20조제2항 2호)

3. 의안전문 : 불 입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입

5. 관계법령 발취 : 해당없음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 할 수 있다.

1.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
2. 한옥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(증여, 그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)한 경우. 다만 상속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건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신축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거나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지원액 환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0조(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건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 할 수 있다</u></p> <p><u>1.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</u></p> <p><u>2. 한옥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(증여, 그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)한 경우. 다만 상속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